

조선시대 기록물의 생산 및 처리과정과 보존

The Creation, Management Process and Preservation of
Archives in the Joseon Period

이 한 희(Lee, Han-Hee)*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기록물 생산 및 처리과정 | <참고문헌> |
| 3. 기록물의 보존 | |

< 초 록 >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그 사상적 배경과 문서관리 의식 및 관련된 제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법규정, 제도 등 기본적인 분석요소들은 조선왕조실록, 법전류, 중기류, 각종 고문서 등의 문헌들을 조사하여 즉 사료에 의한 관련 항목들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법률을 적용한 대명률직해와 경국대전 등 각종 법전에서 보이는 공문서의 다양한 작성 서식, 이첩(移牒) 유형,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 등의 규정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통시대의 기록물의 수집 및 처리과정은 정확하게 실제적인 모습을 알 수는 없으나 예전의 법 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들과 현전(現傳)하는 고문서 등에 의하여 기록물의 수집 및 처리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기록물의 수집 및 처리과정도 전통시대의 경우 오늘날과 유사한 처리과정을 가지고 있다. 의정부나 가각고 등과 같은 기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처리, 이관, 보관 등으로 현대의 기록물 수집, 처리과정과 비슷한 처리과정을 보여주었다.

셋째, 조선시대의 기록물 보관·보존의 경우 현대의 기록물보존소와 유사한 가각고가 있었으며, 사고(史庫)를 비롯한 문서고, 호적고 등과 같은 기관들을 중앙에는 물론 지방에 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각종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 보존하여 영구히 후세에 전하려던 노력을 사료와 기록에서 확인하였다. 또 실록이나 각종 문서에서 보존을 위하여 고안되거나 시행된 여러 방안들과 제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

要語 : 기록물, 수집, 처리과정, 보존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1258586@hanmail.net)

접수일: 2007년 9월 11일 최초심사일: 2007년 9월 13일 심사완료일: 2007년 9월 14일

<ABSTRACT>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thoughts on records manage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the Joseon Perio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uch essential elements as laws and regulations of the Joseon(朝鮮) Period were analyzed by examining 「The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various codes of laws(法典類), Joong-Gi(重記) that is traditional government records and ancient manuscripts(古文書). By investigating 「DaeMyungRyul-JikHae(大明律直解)」 and 「KyungKookDaeJeon(經國大典)」 we could learn about the various rules of the forms, communications among government offices, and the period and method of keeping official documents in the Joseon period.

2. It is not known exactly how to collect and process records in the old days. The analysis of codes of laws and rules and the existing documents, however, enables us to presume the rough outline of those processes. The methods and processes of records management of such institutions as UeiJeongboo(議政府) or Gaggakgo(架閣庫) in the old days are similar to how to collect, manage, communicate, and preserve records in the present time.

3. In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Gagakgo(架閣庫), Sago(史庫), Moonseogo(文書庫), and Hojeokgo(戶籍庫) which are similar to modern archives, and whose primary functions are to create, manage, preserve and transfer records to the future generations. Since there was no centr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 records were managed by separate local institutions, and therefore, not properly managed.

Sillok(實錄) and various other historical records document the methods and systems of preserving records. For instance, when Moonseogo(文書庫) was destroyed by fire, it was relocated to an isolated area, and people were prohibited from living in its neighborhood.

Key words : Archives, Creation, Management Process, Preservation

1. 머리말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공문서를 포함한 각종 기록물이 어떠한 과정과 처리를 거쳐 평가 보존되고 이용에 이르기까지에 관련된 과정과 절차를 각종 사료나 문헌을 통하여 수립·분석·정리한 것이다.

기록물의 생산과 처리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선 시대의 기록물 생애주기는 해당부서의 작성, 단계별 상달, 단계별 하달, 부분적인 등록, 원본보존, 폐기라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종의 사료 등에서 기록물의 처리과정과 관련된 언급은 많지 않으나 법전이나 일부 자료와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록에서 간접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규정이나 법제적인 차원에서 기록물을 언급한 고려시대까지의 예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조선 초기 명에서 만들어져 『經國大典』의 성립이전까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였던 『洪武禮制』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실록의 기사에서 태종 때에는 모든 文字格式 즉 공문서의 套式은 『洪武禮制』에 의하였으며,¹⁾ 세종 때에는 조선의 行移體制가 중국의 제도를 따랐음²⁾을 밝힌 것으로 보아 『洪武禮制』 등의 중국제도나 법률자료의 영향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大明律』³⁾이나 경상비에 해당하는 橫看⁴⁾과 국가세입을 기록한 貢案⁵⁾ 의식절차를 다룬 『五禮儀』와 같은 규례집도 조선초기의 공문서체도를 이루는 중요한 기본 텍스트가 되었다.

특히 국가의 제도정립과 궤를 같이 하면서 성립된 『經國大典』에서는 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더욱더 자세한 규정을 두어 생산과 처리절차, 보관방법 등에 대하여 오늘날 못지않은 기록관리제도의 틀을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계속적으로 편찬된 각종 법전에서는 『經國大典』의

1) 『太宗實錄』 15年 11月 戊申條.

2) 『世宗實錄』 18年 12月 壬午條.

3) 『世宗實錄』 15年 閏8月 壬申條.

4) 윤국일, 『譯註 經國大典』 (서울: 여강, 2000), 454-455.

5) 윤국일, 『譯註 經國大典』 457.

틀을 준수하면서 약간 변용이 시도 되었을 뿐 조선시대 전체를 통하여 일관된 기록관리정책이 유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문서의 종류, 보존기간, 현용문서와 영구보존문서의 처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처리방법은 오늘날의 그것과 비견될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처리과정과 보존에 관련된 조선시대의 각종 사료를 정리하여 조선시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배경적이며 기본적인 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록물 생산 및 처리과정

기록물의 수집 및 처리과정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조선시대의 직접적 관련 문헌이나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법령이나 실록과 고문서와 같은 원전의 기록에서 도출하여 조선시대의 실제의 기록물의 수집 및 처리과정을 간접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2.1 기록물 생산 및 처리과정과 관련된 「經國大典」의 규정

기록물의 생산과 처리과정에서 예로 들 수 있는 중국의 제도 중 738년에 완성한 「唐六典」에서는 각 관부의 관직 중 별도로 句檢官을 두었다. 이는 문서의 수발을 관장하는 직위로서 문서 행정 조직을 위한 기구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구검관은 문서의 접수, 목록 작성, 해당관에 문서 배분, 시행 일정점검 등 문서 행정을 전담토록 하였으며, 중앙의 본관부 대부분과 지방의 부·주·현에 설치되었다.⁶⁾ 이와 같은 중국의 제도는 唐과의 교류가 빈번하였던 新羅 이후의 高麗時代に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포괄적인 추정만 할 뿐이다.

6) 김택민, 「역주 당육전: 상」 (서울: 신서원, 2003), 33-34.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본격적인 자료로서는 조선전기에 편찬된 『經國大典』을 들 수 있다. 물론 『經國大典』에 언급된 내용들이 조선이 건국되어 처음 나타난 제도라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까지의 자료로서는 가장 상세하면서도 전체를 망라한 포괄적인 규정과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經國大典』에 포함된 문서관리에 관한 규정은 제1권 吏典과 제2권 戶典, 제3권 禮典, 제4권 兵典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록물관리와 관련된 규정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리대장(政案)

3년마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는 출신과 내력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조에 제출해서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② 호적(戶籍)

3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고쳐 작성하여 本曹, 한성부, 本道, 본고을에 보관한다.

③ 토지측량(量田)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한 후 대장을 만들어 본조, 본도, 본고을에 보관한다.

④ 문건의 부분(依牒)

새 법을 제정하거나 옛 법을 고치거나 거상 중에 있는 관리를 불러내다가 벼슬을 시키는 것은 의정부에서 토의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본조에서 사헌부, 사간원의 수표를 상고하여 문건의 부분을 내준다.

⑤ 문서의 보관(藏文書)

여러 관사와 여러 고을의 문서는 分類·作綜·懸籤하여 각각 간직한다. 춘추관의 時政記⁸⁾와 승문원의 문서를 3년마다 한 번씩 인쇄하여 본관청, 의정부, 및 史庫에 보관한다. 서장관이 매일 적어놓은 기록은 돌아온 다음

7) 윤국일, 『譯註 經國大典』 79-268.

8) 『승정원일기』와 각 관청의 중요한 문서를 편찬하여 연말마다 책 수를 보고한다.

에 임금의 비준을 받아(啓下9) 승문원의 참고문건(騰錄)으로 삼는다. 인쇄된 책은 隆文樓와 隆武樓에 따로 보관하고 의정부, 홍문관, 성균관, 춘추관과 각 도의 제일 큰 고을에 각각 한 건씩 보관한다. 여러 관청이나 고을들에 있는 문서는 분류하여 유별로 모으고 표를 달아 각기 보관한다.

⑥ 문건에서 적용되는 방식(用文字式)

2품 관청에서는 직접 보고(啓)를 올리기도 하고 직접 공문을 내려 보내기도 하며(行移) 그 나머지 관청들은 모두 소속 조에 보고한다. 대체로 중앙과 지방의 문건은 같은 등급의 관청이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관청에는 關의 형식을 취하고 보다 높은 등급의 관청에는 牒呈의 형식을 취하며 7품 이하의 관청에는 帖의 형식을 취한다.

⑦ 군사대장의 작성(成績)

중앙과 지방의 군정은 6년마다 한 번씩 대장을 작성하여 본조에 보내어 보관하고 본조에서는 그 총 수를 임금에게 보고한다. 수도에서는 5부에서 지방에서는 각기 절도사가, 제주의 세 고을에서는 절제사가 대장을 작성한다. 관찰사가 있는 도와 주진, 거진, 제진에서도 한 부씩 보관한다. 3년마다 한 번씩 각 목장의 말 기르는 사람은 병마절도사가 각 고을의 아전과 역참의 아전은 관찰사가 대장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⑧ 공노비(公奴婢)

공노비는 3년마다 한 번씩 續案을 작성한다.(각 관청의 관리들이 먼저 노비를 수색해 내어 사실을 조사하고 장예원의 관리들과 함께 결속을 지어 대장을 작성한다. 지방이면 그 고을의 원이 노비들을 수색해 내어 관찰사에게 보고한다.) 20년마다 한 번씩 正案을 작성하여 본조, 의정부, 장예원, 司贍寺, 본관청, 본도, 본고을에 보관한다.

이상과 같은 기록물의 분류와 생산, 처리방법, 보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언급하였으나 각각의 항목아래에서 그 절차와 방법이 부분적으로 제시 되어 있다.

9) 啓下: 임금에게 올려서 비준받은 문건을 다시 내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2.2 기록물처리과정에 관한 「實錄」 기록

조선 전기 기록물의 생산과 처리절차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실록기사를 예시할 수 있다.

① 端宗朝

단종 3년 5월 16일 기사¹⁰⁾에 의하면,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都官에 訴訟을 제기한 사람 가운데 期限에 미쳐 署名하지 않은 자는 郎廳 1員으로 하여금 訟사를 聽斷하지 말게 하고, 오로지 그 文案만 推刷하게(문서)庫에 따로 간수하여 두어 會計를 減錄하고, 訟端¹¹⁾을 영원히 根絶시키고, 그 나머지 때때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文案은 따로 分類를 하여 作綜하고, 錄簿를 하여 姦僞를 막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기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간계를 막기 위하여 소송자의 문안을 따로 분류하고 作宗하고, 錄簿 한다고 하였다. 이는 「經國大典」에서 규정하고 있는 分類, 作綜, 懸籤이라는 과정에서 錄簿라는 절차가 추가 된다고 볼 수 있다. 錄簿는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목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成宗朝

성종 7년 4월 28일 기사¹²⁾에 의하면, 왕이 전교하기를,

“근래에 여러 官司의 文書는 管理[吏] 된 자가 대개 檢莊하지 아니하여 흩어져 없어진 것이 태반인데, 攷閱을 만날 때마다 의거할 데가 없으니 불가하다. 이제부터는 중국 조정의 예에 의하여 매 衙門마다 각각 木莊을 두어 해마다 매 달에 무릇 이미 행한 문서는 分類하여 作綜하고, 懸籤하여, 따로 目錄을 작성하여 解由하되, 傳掌하거나 出納할 즈음에 반드시 해당 관리가 몸소 감독하여 亡失하지 말게 하라.”

10) 「端宗實錄」 端宗 3年 5月 庚申條.

11) 소송의 단서.

12) 「成宗實錄」 成宗 7年 4月 辛丑條.

하였다.

이 기사의 내용은 조선시대 기록관리 제도의 큰 틀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내용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i) 여러 官司의 文書는 관리[吏] 된 자가 대개 檢莊하지 아니하여 흩어져 없어진 것이 태반 : 이는 기록물 담당자가 문서를 조사하여 같은 사안끼리 묶지 않아서 흩어진 것에 대한 진술이다.
- ii) 考閱을 만날 때마다 의거할 데가 없으니 불가하다 : 여기서는 각 필요한 사안이 발생해도 문서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거나 모여 있지 않아 참고하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iii) 중국 조정의 예에 의하여 매 衙門마다 각각 木莊을 두어 : 각각의 행정부서에 나무로 제작된 보관함을 마련하고 있었다.
- iv) 해마다 매 달에 무릇 이미 행한 문서는 分類하여 作綜하고 懸籤하여 : 이 기록은 「經國大典」의 '藏文書'條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문서를 분류하고 作綜하고 懸籤한다는 것은 문서를 분류하고, 분류된 문서를 편철하고 찌(籤)같은 작은 첨부물을 달아둔다는 것은 훗날 찾기에 편리하도록 가이드의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v) 따로 目錄을 작성하여 解由하되 : 이는 목록을 만드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錄簿하는 과정과 같을 것으로 판단되어,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 인계할 때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을 말한다.
- vi) 傳掌하거나 出納할 즈음에 반드시 해당 관리가 몸소 감독하여 亡失하지 말게 하라 : 전장이란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맡아보던 일이나 물건을 넘겨서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전장하거나 출납할 경우 분실을 막기 위하여 해당 관리의 감독아래 전장과 출납을 가능하게 하여 분실을 막도록 하였다.

2.3 기록물의 생산

기록물의 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생산과 시행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적 사대문서

교린문서 등 외교문서를 담당하였던 기관 중 대표적인 곳은 고려 때의 文書應奉司와 이를 계승한 1411년(태종 11)부터 설치된 조선시대의 承文院이다.

이 기관들에서 생산하거나 다루었던 기록물은 表文, 箋文, 狀文, 咨文, 奏文, 啓文, 申文, 呈文, 單子 등으로 이는 문서의 내용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문서전달의 최종대상을 고려한 구분으로서 「典律通補」에서는 事大文書 23종, 交隣文書는 2종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담당한 사람들은 製述官, 吏文學官 및 寫字官 등이며 製述官은 문서의 내용과 형식을 책임지고 寫字官은 문신 가운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맡았으며 吏文學官은 사대문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 인재양성의 직책이었다.

이 때의 생산절차를 정리하면 ① 製述 ② 繕寫 ③ 讀准黑草(黑草查對) ④ 畢寫 ⑤ 安寶 ⑥ 封裏의 과정을 걸쳐 발송하였다.

한편 국내의 기록물은 「經國大典」의 ‘用文字式’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문서를 올리는 절차나 문서의 작성형식을 정하여 통용하게 하였다. 이런 법률에서 규정한 문서의 양식은 조선후기에 있어서는 실무의 문서작성 형식의 행정편람이라 할 수 있는 「儒胥必知」에서 살펴볼 수 있다.

「儒胥必知」는 일반 胥吏들의 机上便覽으로, 用文例에는 吏文雜例를 그대로 옮기고, 首尾에 약간의 文例를 덧붙였다. 항목을 上言·擊錘·原情·所志類·單子類·告目類·文卷類·通文套 등으로 분류하고, 책 끝에는 부록으로 吏讀彙編을 수록하였다.

2.4 기록물의 전달

‘行移體制’란 각 관부간의 공문서를 주고받는 체제를 의미하는데 각 관청에서 공문서를 주고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서를 사용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으로 조선이 개국하면서 명대의 공문서 제도를 많이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물의 전달이나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중국과 한국의 전통사회에

서 비록 약간의 개념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체제와 경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經國大典」과 중국의 「唐六典」과의 내용을 비교로 살펴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唐六典」에 의하면,

“... 무릇 위에서 아래로 미치는 문서는 그 제도가 여섯 가지가 있으니 制·勅·冊·令·教·符¹³⁾라 한다. ... 아래에서 위로 이르는 문서는 그 제도가 역시 여섯 가지 있으니 表·狀·牋·啓·牒·辭¹⁴⁾라 한다. ... 여러 관부 간에 서로 문의하는 문서양식은 그 의례가 세 가지 있으니, 關·刺·移¹⁵⁾라 한다. ... 또 내외의 百司가 받은 사안은 모두 그 발송일자를 분명히 표시하여 그것으로써 처리기한을 정하는데, 어떤 날 받았으면 그 이튿날에 발송한다.”

고 하여 기록물의 전달유형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唐六典」¹⁶⁾에서는 문서의 처리기한에 관련한 자세한 규정도 수록하고 있어서 小事는 5일, 中事는 10일, 大事는 20일, 獄案은 30일인데, 급무일 경우는 이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사안에 따라 거치는 경로가 많아질 때는 1-2일씩의

13) 制, 勅, 冊은 천자가 내리는 것, 令은 황태자가 내리는 것, 教는 친왕이 공주가 내리는 것이다.
 14) 表는 천자에게 올리는 것, 狀은 천자의 근신, 牋, 啓는 황태자에 올리는 것, 牒은 구품이상 관인의 공문, 辭는 서인의 말이다.
 15) 關은 사안을 연결시켜 통하게 하는 것, 刺는 사안을 지적하는 것, 移는 사안을 다른 담당부서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16) 김택민, 역주 당육전: 상, 136-141.
 凡都省掌學諸司之綱紀與其百僚之程式, 以正邦理, 以宣邦教. 凡上之所以逮下, 其制有六, 曰: 制, 勅, 冊, 令, 教, 符. ... 凡下之所以達上, 其制亦有六, 曰: 表, 狀, 牋, 啓, 牒, 辭. ... 諸司自相質問, 其義有三, 曰: 關, 刺, 移. ... 凡內外百司所受之事皆印其發日, 爲之程限: 一日受, 二日報. ... 小事五日, ... 中事十日, ... 大事二十日, ... 獄案三十日, ... 其急務者不與焉. 小事判勾經三人已下者給一日, 四人已上給二日; 中事, 海經一人給二日; 大事各加一日. 內外諸司咸率此. ... 凡尚書省施行制, 勅, 案成則給程以鈔之; ... 若軍務急速者, 不出其日. 若諸州計達於京師, 量事之大小與多少以爲之節: 二十條以上, 二日; 倍之, 三日; 又倍之, 四日; 又倍之, 五日; 雖多, 不是過焉. ... 凡制·勅施行, 京師諸司有符·移·關·牒下諸州者, 必由於都省以遺之. ... 凡文案既成, 勾司行朱訖, 皆書其上端, 記年·月·日, 納諸庫. 凡施行公文應印者, 監印之官考其事目, 無或差繆, 然後印之; 必書於曆, 每月終納諸庫.

증가도 있었다. 사안의 대소와 문서의 다과를 헤아려 초본을 만드는 기한의 단계도 달리하고 있다. 制·敕을 반행하거나 중앙 관부의 문서를 여러 주로 내려 보낼 것이 있으며, 반드시 도성을 거쳐서 보내고 문안이 이루어져 구검하는 낭중·원외랑이 확인을 마치면 그 상단에 연·월·일을 적어서 문서고에 넣는다.

반행하는 공문에 관인을 찍어야 할 경우, 인장을 담당하는 관인이 문안의 사목을 살펴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거기서 도장을 찍고, 반드시 事目曆에 기재하고 월말마다 문서고에 넣는다.

즉 이미 唐代에서부터 이러한 조항을 두고 기록물에 대한 생산과 처리, 전달에 관련된 철저한 관리가 있다는 것은 중국의 문물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율령과 제도를 정비한 통일신라와 고려도 중국과의 외교문서의 授受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체제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5 기록물의 등록과 부분

「經國大典」에 의하면 관부문자, 즉 관아 상호간에 왕복하는 문서를 비롯하여 민인에게 발급하는 문서 등 관부가 작성하여 수발하는 모든 문서는 원본과 함께 원본 그대로 부분을 만들어 두어 후일의 憑考로 삼도록¹⁷⁾하고 있다.

한편 소장문서의 보유현황을 알기위한 목록과 유사한 것으로서¹⁸⁾ 소장문서의 증빙을 위한 자료로 각 기관에 비치하고 있던 謄錄의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

17) 윤국일, 「譯註 經國大典」禮典, 用文字式條, 173

18) 「英祖實錄」5年 6月 甲午條.

‘大臣·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李台佐가 아뢰기를,’

“정부에서 署事하는 것이 과한 뒤에 廟堂의 謾獸가 備局에 있게 되었는데, 문서가 산란해져서 輒도의 變通에 대한 일과 전후 疏章·啓草에 이르기까지 한번 覆誅한 뒤에는 다시 考閱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뒤에 묘당에 있게 되는 사람은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만일 部門별로 抄하여 하나의 冊子를 만들어 考覽하기에 편리하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故 相臣 徐文重이 일국의 城池와 軍摠을 기록하여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 軍國摠數라고 이름했으며, 고 상신 金構는 오래 된 문서를 分類하여 抄謄錄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것을 다시 합쳐 釐正해서 책을 열어 환히 알 수 있게 한다면 국가를 경영하는 大體에 반드시 유익할 것입니다.”

로 인하여 원 소장 자료가 없어졌을 경우 이의 재발급이나 확인, 정리를 위하여 작성해두고 있었다. 예를 들어 忠勳府謄錄의 경우 공신녹권을 받은 사람의 내용과 녹권의 내용을 필사해둠으로써 후손들의 身役이나 賦稅의 처리에 결정적인 확인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노비나 토지문기 역시 관에 보관된 문서로 紛失이나 散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태에 대비하였다. 그밖에 각종의 人事나 戶口에 관련된 많은 문서들이 증빙의 목적으로 작성되고 활용되었다.

2.6 기록물의 정리과정

대체로 이 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 업무는 문서의 분류와 편철, 보관, 목록의 작성, 보고 등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문서의 분류와 편철에 대해서는 앞의 실록기사에서 살펴본 것같이 「經國大典」의 ‘藏文書’條에서 여러 官司와 여러 고을의 문서는 分類, 作綜, 懸籤하여 간직한다고 하여 이때의 분류란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업무의 주제나 사안별, 기결과 미결, 처리기간별 등과 같은 구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각종 사료에서는 확인 할 수 없다.

다음 단계로 분류된 문서의 作綜¹⁹⁾이란 모아서 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의 編綴作業과 같은 것으로 사전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역시 그 단위나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懸籤이란 箋紙에 문서의 내용이나 처리부서, 기간 등을 적어 편철된 자료에 색인가이드 형식의 작은 첨부물을 부착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정조대 규장각 목록의 경우 ‘西序書目籤錄’이라 하여 책에 주제별로 색깔을 달리하는 첨부물 즉 일종의 스티커를 붙여 구분한 경우도 있다.

목록의 작성과 보고의 경우 역시 「經國大典」의 ‘藏文書’조에서 春秋館의 時政記를 다루면서 “承政院日記와 각 衙門의 艱要한 문서를 撰集하여 연말마다 그 冊數를 보고 한다”는 주석의 언급으로 볼 때 각 기관에서 생산된 문서 중

19) 이 ‘作綜’의 개념은 김상호는 편철, 제책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며 김혁은 낱장의 문서를 한 곳에 모으거나 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다른 해석이 있다.

중요한 문서를 매년 한 차례 정리하여 중앙에 정기적으로 그 생산수량을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撰集’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언급한 ‘作綜’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방에서의 기록물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현용문서와 비현용문서를 구분한 전제위에서 해당 所에서 보관하거나 樓下 庫에 보존하였다.
- ② 활용이 끝난 비현용문서 중에서 문서 가치가 높은 증빙문서와 법규문서는 樓上 庫에 보관시켰다.
- ③ 준활용 단계까지는 각 所에서 관리하지만 비현용의 단계에 들어가면 일련의 보존절차를 거친다. 일반 公牒 문서의 경우 原狀이 발송된 뒤에 해당 각 所에서 그 내용을 수록하거나 일기형태로 기록한 뒤 누상고에 보관하였다.
- ④ 모든 문서는 폐기와 영구보존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기록으로 남겼으므로 별도의 문서등록대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 ⑤ 국가차원의 보존기간과 장소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지방관아마다 규정이 다양하였고 관례에 준하여 관리되었다.

이러한 지방의 기록물 처리에 비하여 중앙에서 적용된 규정들에서는 부분적으로 엄격한 조항도 있어서 印信, 僞造 등은 물론 처리기한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되었다.

「大明律直解」에서는 官文書의 처리를 지체하여 기한을 넘긴 자에 대하여 1일당 태 10대의 형에, 3일 넘기면 죄 1등을 가하여 태 40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각 관사가 소속관원으로부터 문건을 접수하면 가부를 결정하고 승인 여부를 통첩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미루거나 시행하지 않으면 杖 80대에 처하고 일을 지체하여 시행하지 않거나 완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官文書稽程’의 죄를 적용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을 갖추어 문서처리의 적시성을 강조하였다.

2.7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

한편 「經國大典」이 성립된 이후는 여러 가지 條文이나 실물자료로서 현존 조선시대 고문서의 용례를 통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政案 : 관리들의 이력 대장 - 3년마다 제출 - 吏曹
- ② 戶籍 : 가구, 호구 - 3년마다 작성 - 본고을, 본도, 한성부, 本曹
- ③ 量案 : 토지측량 대장 - 20년마다 작성 - 본고을, 본도, 本曹
- ④ 時政記 : 춘추관 - 3년마다 印刷 - 본관청, 의정부, 史庫
- ⑤ 承文院의 文書 - 3년마다 印刷 - 본관청, 의정부, 史庫
- ⑥ 軍士 名簿 - 날마다 확인
- ⑦ 軍政 臺帳 : 중앙과 지방 - 6년마다 작성 - 本曹, 국왕
- ⑧ 牧子臺帳 : 말 기르는 사람 대장 - 3년마다 작성
- ⑨ 續案 : 공노비에 대한 보충문서 - 3년마다 작성
正案 : 공노비에 대한 정식문서 - 20년마다 작성
- 형조, 의정부, 장예원, 司贍寺, 소속관청, 본도, 본고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번 작성된 문서가 다음 번 고쳐지거나 재작성 될 때까지의 기간이 3, 6, 20년 등 다양한 기간이 문서의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달리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속되는 수정과 재작성의 작업이 통치의 기본적인 절차이며 새로운 문건이 만들어지기까지 舊文件은 증빙을 위한 문서의 처리와 유지와 보존은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처리 및 보존기간은 물론 소장문서의 引受·引繼도 철저히 규정하고 있어서 「大明律直解」에서는 官司의 담당자가 재직기간이 만료되어 교체될 때는 하나하나 증빙을 명백히 하고 所管 原文書를 새로운 담당자에게 교부할 것과 이를 위반하면 장 80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록물의 관리는 기간과 작성과 처리의 담당기관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지만 보존에 대해서는 기록물의 형태, 보관 장소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기록물의 형태 즉 물리적 변형에 따른 구분 방식에 대하여 김혁²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① 1차 기록물 원본을 보존하는 방식
- ② 1차 기록물 원본을 편철, 성책하여 보존하는 방식
- ③ 1차 기록물의 기록을 전사하여 새로운 편집본을 작성하여 수록하는 방식

이 중 ②와 ③의 경우는 해당업무에 필요한 담당관청에서 收受했던 문서들 일체와 자체에서 작성한 회계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편집하여 행정계통 전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참고 기록물의 성격을 갖도록 2차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각종의 처리과정을 거친 기록물의 보존은 重記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 중 戶籍臺帳과 같은 문서는 대개 樓下庫, 樓上庫 등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量案이나 田案行審冊 등 각종 토지 관련문서들은 담당 관청인 書廳, 書役所 등에 보관되었고, 각종 節目 중 校院節目, 鄉竹甸節目 등은 향교 등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보아 직접 문서와 관련된 관청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지방의 관청마다 일률적으로 보존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호적이나 각종 存案 등 활용문서는 수령의 집무처인 동헌에 보관하면서 항상 참고하였다.²¹⁾

2.8 기록물의 폐기

문서의 관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보존문서와 폐기문서에 대한 평가나 그 기준이 언급된 자료는 많지 않다. 특히 폐기에 관해서는 그 기준은 알 수 없으나 현존의 고서 등에서 각 지방에서 舊文書를 이용하여 책을 인쇄한 예가 보고 되어 있다. 특히 임난전의 자료로 세종21년의 첩정을 소개한 박병호²²⁾의 연구, 16세기 후반

20) 金赫, “朝鮮後期 中央官廳 記錄物에서 謄錄의 위상,” 季刊 書誌學報 卷26호(2002. 12), 100.

21) 先覺, 22, 詳案牘.
“戶籍及各色案 封置東軒房中 凡于民狀及人物有可考者 卽考之”

충청도 지역의 첩정을 소개한 안병희²³⁾의 연구, 같은 16세기 후반의 형옥관련 문서를 연구한 남권희²⁴⁾의 연구, 이겸노²⁵⁾에 의한 15세기 경상도 일부지역의 문서의 소개 등에서 폐기된 고문서를 이용한 서책의 인출이 알려져 있다. 이 경우 목판으로 인출된 서적들이 문서의 작성시기와 비교할 때 그다지 오래 경과되지 않은 1세기이내에 폐기된 것으로 볼 때 등록으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앞에서 언급된 3-20년을 경과한 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서보존의 개념이나 목적과 관련하여 김현영²⁶⁾은 “조선시대에는 원문서를 보관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보존할 만한 文面이 있다면 그것은 원문서를 등서하여 보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여 폐기 당위성을 지적하였다.

또 『世宗實錄』에 “옛 문서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문서를 세속에서 ‘休紙’라고 부른다.”²⁷⁾는 언급에 의하여 비활용문서로서 준영구나 영구문서의 범주에 들지 않는 활용이 끝난 폐기문서로 休紙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물리적으로 재활용하여 지방의 필요한 책을 찍어내는 종이로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3. 기록물의 보존

조선시대에도 오늘날과 유사한 기록물 보존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날과는 조금금은 다른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었다.

22) 박병호, “세종 21년의 첩정,” 『법사학연구』 제1집(1974), 127-134.

23) 안병희, “古書의 紙背文書에 대하여: 排字禮部韻略에 보이는 牒呈을 중심으로,” 『서울대 도서관보』 (1975), 2-10.

24) 남권희, “15·16세기 慶尙道 地域의 刑獄關聯文書와 牒呈文書,” 『書誌學研究』 제23집 (2002. 6), 235-289.

25) 이겸노, “책방비화,” 『신동아』 6월호(1973), 202-205.

26) 김현영,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의 기록의 생산과 보존,” 『古文書研究』 제28호(2006. 2), 28.

27) 『世宗實錄』 7年 8月 戊子條, “古文書不用者, 俗謂之休紙”

3.1 기록물 보존소

3.1.1 架閣庫

가각고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치는 동안 약 200년동안 국가의 기록물보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 기능은 문서의 보존과 이용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문물제도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이 가각고의 경우도 중국의 관제를 모방하여 성립되었다. 그 유래에 관하여 光海朝의 許均이 언급한 바 있다.²⁸⁾

世宗, 世祖 등에 의하여 가각고는 문서 보존기관으로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 예로 漢 高祖가 咸陽을 함락시켰을 때에 여러 장수들은 모두 다투어 금과 비단 등의 재물을 취하였지만, 蕭何는 홀로 먼저 진의 丞相府에 들어가 圖籍²⁹⁾을 거두어 소장하니 이로써 패공이 천하의 운수와 戶口數 및 강한 곳과 약한 곳을 알게 되었다는 일화를 인용하여 1439년(세종 21)³⁰⁾과 1462년(세조 8)³¹⁾에 문서보존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서관리의 주된 업무를 관장하

28) 『增補文獻備考 下』, 606.

“가각은 중국 宋나라 관제로서 문학하는 신하를 뽑아서 맡기고 兩府(中書門下省, 中樞院)에 모두 있었으니 대개 典故를 거두어 두고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상상컨대 국초에 이로 인해서 설치한 것 같다.

29) 지도와 호적

30) 『世宗實錄』 世宗 21年 6月 甲申條.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신 등이 예조의 明文에 의거하여 架閣庫 및 錄事房에 각각 奴婢를 주기를 아뢰어, 이미 受敎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자세히 참고하건대, 옛 漢 高祖가 關中에 들어가자, 蕭何가 홀로 먼저 들어가서 丞相府의 圖籍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圖籍을 승상부에 간직한 것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사옵습니다. 本朝에서는 도음을 세울 초기에 가각고를 本府 의 곁에 두고, 錄官은 모두 본부의 錄事로써 差任한 것은 역시 그 남긴 제도입니다. 이제 兼丞을 더 설치하고도 또 提調를 둔 것은, 특히 그 文籍을 出納할 즈음에 考察하는 바가 없어서, 혹시 흩어지고 遺失되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한 것이옵니다. 가각고와 녹사방은 이름이 비록 다를지라도 기실은 일체이오니, 둘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노비는 그대로 두어 녹사방에서 예전대로 맡게 하고, 文籍 출납할 때를 당하여 제조와 겸승으로 하여금 열고 닫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1) 『世祖實錄』 世祖 8年 4月 丙戌條.

는 각각고의 근거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선 왕조가 시작되면서 제도 정비와 처리 문서의 증가로 인하여 고려 때보다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각각고의 소장 자료의 경우 移行文書 즉 처리가 끝난 문서를 수장하였고, 처리되지 않은 문서는 六曹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으며,³²⁾ 각 년의 條例文書의 경우도 謄錄한 것만을 수집하는 것으로 보아 능동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지 않고, 오늘날 문서이관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문서의 효력과 처리가 끝난 문서를 증빙의 목적으로 소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중요 문서와 3건씩 작성하는 노비문서, 財用物에 관한 문서의 한 부를 반드시 각각고에 비치해 두도록 하였는데, 이는 분실과 훼손에 의한 증빙과 위조에 의한 奸僞를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각각고의 기능은 문서의 보존관리 뿐만 아니라 이용을 위하여 문서를 정리하고 제공하였지만 수장된 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항상 개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속관원의 주관 아래 개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각고의 관리에 있어서 기관의 중요성이나 자료의 수량에 비하여 관리상태가 소홀하고 항상 분실과 훼손의 우려가 있었다. 1462년(세조 8) 4월에는 문적의 도난이나 偷取, 散失을 막기 위하여 궁의 가장자리에서 의정부 안으로 각각고를 옮겼으나 그 관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1468년에 폐지되지만, 이후에도 문서고는 존속되어 의정부의 문서를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³³⁾ 실록의 기사에

“架閣庫에는 看守奴婢가 없으니 文籍을 혹시 사람에게 도둑맞을까 염려됩니다. 옛날에 蕭何는 먼저 丞相府의 圖書를 거두었으니, 원컨대 架閣庫를 議政府의 牆內로 옮기어 문적의 散失을 막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옮겨 두게 하였다.

32) 「太宗實錄」太宗 14年 4月 庚申條.

“... 議政府 중에 行移하지 않은 文書는 六曹의 郎廳을 불러 와서 交付하고, 이미 行移한 文書는 架閣庫에 옮겨 갈무리 하되, 모든 差遺이나 受點 따위의 일은 吏曹·兵曹에 보냅니다. ...”

33) 「中宗實錄」中宗 8年 12月 戊寅條.

“간밤에 本府의 문서를 두는 樓庫에 불이 나서, 奴婢의 正案과 오래된 謄錄이 죄다 탔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이것은 아랫사람들이 불을 삼가지 않은 소치이겠으나 이것도 災變이니, 신들은 在職하기 미안하므로 감히 사직합니다.”

따르면 노비의 정안과 오래된 등록으로 보아 예전에 가각고에서 보관하였던 기록물에 해당하므로 가각고의 역할을 의정부의 문서고가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3.1.2 史庫

사고는 고려 및 조선시대 나라의 역사기록과 중요한 서적·문서를 보관한 국가의 書籍庫를 의미한다. 특히 사고 안에 따로 역대 實錄을 보관한 곳을 史閣이라 해서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實錄」의 기사에 의하면 문서를 등사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고에 보관하게 하였다는 기록³⁴⁾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문서는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에 대하여 璿源殿에 간직하지고 하는 기록³⁵⁾과 명나라 조정의 문서를 사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기록³⁶⁾ 등으로 보아 문서의 보관처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고에서 문서나 서적을 점검하거나 이용할 때는 形止案이라는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의 상태나 점검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유형으로 曝曬形止案과 考出形止案 등이 있다.

34) 「世宗實錄」 世宗 3年 3月 乙酉條.

“고려로부터 大明을 섬겨온 이후, 모든 문서는 다만 원본만을 간수하고 있는데, 만일 수재나 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상고할 길이 없으니, 바라옵건대, 이를 베껴서 여러 史院에 간직하게 하소서.”라는 승문원 제조의 계에 의하여 중앙과 지방에 있는 史庫에 문서를 간직하게 하였다.

35) 「世宗實錄」 世宗 16年 8月 己酉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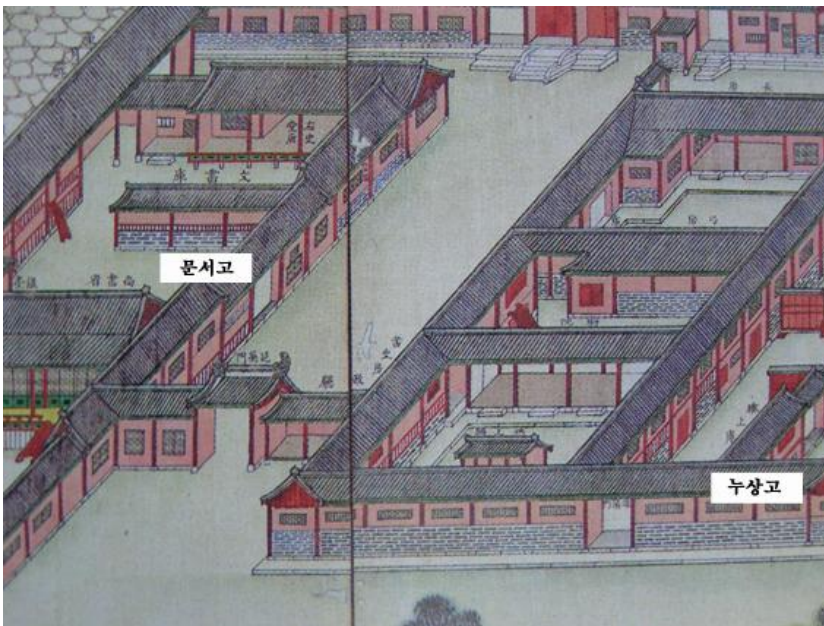
“선대로부터 전하는 문서를 어느 곳에 간직할지 알지 못하겠다.”는 의논에서 璿源殿에 간직하여 뒤에 상고하는 證憑이 되게 하였다.

36) 「肅宗實錄」 肅宗 3年 8月 戊申條.

“중 獨步가 일찍이 間使(1730) 로서 명나라 조정에 오갈 그 때에 명나라 조정의 勅諭 및 經略의 별도 咨文이 있었는데 이도 또한 뒷날에 고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반드시 禁中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이외의 內藏하고 있는 명나라 조정의 문서도 모두 하나하나 찾아내어 아울러 간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는 의견에 史官 李玄錫이 曝曬하러 갈 적에 封書 하나를 내리며 강화 사고에 간수하도록 명했다.

3.1.3 文書庫

문서고는 의정부, 六曹, 특히 義禁府가 소속된 형조, 推刷色³⁷⁾ 등 해당부서에 서 생산하는 문서를 보존하는 곳이다. 문서고에 보존되었던 기록물들은 관부간의 관문, 이문, 칙정, 감결, 서목, 해유문서 등으로 현재 효력을 가지고 있는 즉 오늘날 현용문서라고 할 수 있는 문서인 舉行文書의 경우 樓下考에 보관하고 있고, 효력이 지났거나 시기가 오래된 문서 오늘날의 영구보존문서나 준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하는 久遠문서와 啓覆文書와 같은 형률과 소송에 관련된 문서의 경우는 그 사건이 해결된 이후까지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樓上庫에 보존하였다.



<그림 1> 「東闕圖」에서의 문서고와 누상고

37) 「世祖實錄」世祖 11年 3月 癸酉條.

‘推刷色令史 洪유의가 推刷文書庫에 불난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의금부에 명하여 鞫問하게 하였다.’

<그림 1> 「東闕圖」에서 보면 文書庫와 樓上庫가 인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서고는 樓下庫로 볼 수 있어서 거행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가 끝이 나면 그 가까이에 위치하던 樓上庫로 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조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문서고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를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그 규모에 대하여는 「東闕圖」에서의 문서고의 규모와 그리고 「度支志」와 「秋官志」에 나와 있는 호조와 형조의 문서고로서 추정해 볼 수 있다.

「度支志」에서 籌學廳의 庫舍 8間에는 貢案과 續案의 문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版籍司의 문서고는 3間, 辦別房의 문서고는 5間, 前例房의 문서고는 2間, 別例房의 문서고는 5間이었다.³⁸⁾ 형조에서 南廊의 樓上庫 8房에는 오래된 문서들을 官封하여 보관하고, 樓下庫 8房에는 시행할 문서를 보관하였다. 東廊에는 계북문서를 보관하는 祥覆房 2間이 있었고, 南廊에 7間的 續案庫가 있었고, 東廊에도 3間的 續案庫가 있었다.³⁹⁾

3.1.4 지방의 文書庫

「經國大典」의 ‘量田條’나 ‘藏文書條’ 등의 조문을 보면 토지대장을 각 고을에서 보관한다고 규정되어진 점과 여러 관사와 여러 고을의 문서를 分類, 作綜, 懸籤하여 각각 간직한다는 걸로 보아 토지대장 같은 문서는 국가 재정과 송사자료로서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이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방관아에 문서고가 설치되었다.

지방의 문서고에 관한 기록으로 1530년(중종 25) 11월 5일에 헌부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황해도감사의 寢房에 화살을 쏜 일과 原州營의 文書樓庫가 불에 탄 일은 다 놀랍습니다.”라는 기록⁴⁰⁾에서 원주의 지방관아에도 문서고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8) 「度支志」 영인본(1967), 17.

39) 「秋官志」 第1編, 館舍條.

40) 「中宗實錄」 中宗 25年 11月 辛卯條.

‘憲府啓曰… 黃海道監司, 寢房射箭事, 及原州營文書樓庫燒火事, 皆爲駭愕.’

또 다른 기록인 지방읍지 중 평안도 三和府의 읍지에서 문서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으며, 평안도의 价川의 읍지에는 문서고가 3間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표 1>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읍지와 지방지도에서 보면 지방관아의 경우도 중요문서는 보다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별도의 문서고를 짓고 다른 일반 문서와 구분하여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방읍지에는 帳籍庫, 帳籍廳, 樓上庫, 留上庫, 田案庫, 文書倉庫 등의 이름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장적고와 장적청의 경우 호적이외에 토지대장 등의 문서들도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누상고는 문서고에서 영구보존하기 위한 舉行文書를 보존하던 곳이며, 留上庫의 경우는 누상고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다. 田案庫의 경우도 토지대장을 보관하고 있던 곳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기타의 문서들을 보관하였던 것이 문서창고로 보인다.

<표 1> 각종읍지에 나타난 지방기록물 보관처

江華府(誌)	京籍庫 ⁴¹⁾ 府籍庫 ⁴²⁾
价川	文書庫 ⁴³⁾
慶州府	戶籍所 ⁴⁴⁾
公山誌	戶籍庫 ⁴⁵⁾
機長	戶籍庫 ⁴⁶⁾
綾州邑	戶籍庫 ⁴⁷⁾
三和府	文書庫 ⁴⁸⁾
西海	戶籍所 ⁴⁹⁾
楊口	戶籍庫 ⁵⁰⁾
彦陽縣	戶籍所 ⁵¹⁾
靈光	戶籍廳 ⁵²⁾
寧城	戶籍庫 ⁵³⁾
英陽縣	戶籍所 ⁵⁴⁾
迎日縣	戶籍庫 ⁵⁵⁾
寧海府	戶籍庫 ⁵⁶⁾
龍灣誌	田案所 ⁵⁷⁾
蔚山府	戶籍所 ⁵⁸⁾
蔚珍	戶籍庫 ⁵⁹⁾

慈仁縣	戶籍庫 ⁶⁰
長鬐縣	戶籍庫 ⁶¹
載寧郡	戶籍色 ⁶²
天安郡	戶籍庫 ⁶³
清河縣	帳籍庫 ⁶⁴
平昌	戶籍庫 ⁶⁵
陝川	戶籍所 ⁶⁶
黃山驛	帳籍廳 ⁶⁷

- 41)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十 京畿道 ①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569.
- 42)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十 京畿道 ①, 569.
- 43)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十五 平安道 ②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6), 81.
- 44)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一 慶尙道 ①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77.
- 45) 서울대학교규장각, 忠淸道 邑誌: 一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1), 77.
- 46)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二〇 慶尙道 ④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7), 624.
- 47) 서울대학교규장각, 全羅道 邑誌: 七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4), 358.
- 48)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十四 平安道 ①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6), 599-600.
- 49) 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33 黃海道 3(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90), 76.
- 50) 서울대학교규장각, 江原道 邑誌: 三(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1997), 578.
- 51)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一 慶尙道 ①, 996.
- 52) 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24 全羅道 1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89), 287.
- 53) 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14 忠淸道 1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89), 60.
- 54)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二〇 慶尙道 ④, 660.
- 55)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一 慶尙道 ①, 621.
- 56)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一 慶尙道 ①, 479.
- 57) 한국인문과학원, 朝鮮時代 私撰邑誌: 49 平安道 5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90), 290.
- 58)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二 慶尙道 ②, 455.
- 59)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十八 江原道 ①(서울: 아세아문화사, 1986), 366.
- 60)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一 慶尙道 ①, 752.
- 61)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二〇 慶尙道 ④, 702.
- 62)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十二 黃海道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127.
- 63)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七 忠淸道 ①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118.
- 64)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一 慶尙道 ①, 986.
- 65)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十八 江原道 ①, 218.
- 66)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一 慶尙道 ①, 724.
- 67) 한국학문헌연구소, 邑誌: 二〇 慶尙道 ④, 251.

<표 2> 규장각 소장 고지도에 나타난 지방기록물 보관처

架山鎮	戶籍與軍器雜物, ⁶⁸⁾ 戶籍庫 ⁶⁹⁾
江陵府	史庫 ⁷⁰⁾
金堤郡	戶籍庫 ⁷¹⁾
樂安郡	樓上庫 ⁷²⁾
潭陽府	史廳 ⁷³⁾
茂朱府	史閣 ⁷⁴⁾
靈光郡	戶籍庫 ⁷⁵⁾
沃川郡	書役廳 ⁷⁶⁾
恩津	樓上庫, ⁷⁷⁾ 文庫 ⁷⁸⁾
鎭川	樓上庫 ⁷⁹⁾
天安郡	戶籍庫 ⁸⁰⁾
靑山鎭	戶籍庫 ⁸¹⁾
漆谷	戶籍庫 ⁸²⁾
泰安	戶籍庫 ⁸³⁾
咸平	樓上庫 ⁸⁴⁾
咸平縣	帳籍庫 ⁸⁵⁾
咸豐	帳籍庫 ⁸⁶⁾
海南縣	留上庫 ⁸⁷⁾
興德縣	戶籍庫 ⁸⁸⁾
懷德縣	樓上庫 ⁸⁹⁾

68) 架山鎭 지도(규장각 소장 고지도).

69) 架山鎭 지도(규장각 소장 고지도).

70) 江陵府 지도(규장각 소장 고지도).

71) 서울대학교규장각, 朝鮮後期地方地圖: 全羅道 편 金堤郡 지도(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1996).

72) 서울대학교규장각, 朝鮮後期地方地圖: 全羅道 편 樂安郡 지도.

73) 서울대학교규장각, 朝鮮後期地方地圖: 全羅道 편 潭陽府 지도.

74) 茂朱府 지도(규장각 소장 고지도).

75) 서울대학교규장각, 朝鮮後期地方地圖: 全羅道 편 靈光郡 지도.

76) 沃川郡 지도(규장각 소장 고지도).

77) 恩津 지도(규장각 소장 고지도).

78) 서울대학교규장각, 朝鮮後期地方地圖: 忠淸道 편 恩津 지도.

79) 鎭川 지도(규장각 소장 고지도).

80) 天安郡 지도(규장각 소장 고지도).

3.1.5 戶籍庫

조선시대의 경우 호구단자를 2부 만들어서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확인하고, 제출된 호구단자를 보관한다. 변동이 많은 호구단자의 경우 3년마다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이렇게 모아진 호구단자는 분량도 많아 3년마다 제출한 호구단자들을 시기별로 계속 보관하려면 별도의 보관처가 있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호구단자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선시대에는 별도의 호적고가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지방읍지와 지방지도에서 건물이나 그림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호적고와 문서고가 같은 기능을 하고 명칭만 달리한다는 견해도 있으나,⁹⁰⁾ 호적고 라는 명칭은 지방의 읍지나 지방지 또는 지방지도에서 나타난다. 표기에서도 호적고와 문서고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문서고의 경우 지방읍지나 지방지도를 찾아보면 樓上庫와 문서고가 나타나 있으며, 호적고의 경우는 위치가 동헌과는 약간은 떨어져 있으나 樓上庫의 경우는 동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문서고(樓上庫)에는 각종 문서들과 사용하고 있는 호적들을 보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토지대장의 경우는 20년마다 조사하여 새로 기재하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지만 호적은 3년마다 조사하여 새로 기재하기 때문에 호적의 경우 문서에 있어서도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신분 그 자체를 확인하는 기능을 가졌던 호적은 문서로서의 중요성도 크지만, 조상들의 자취를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이미 거행이 끝난 호적도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⁹¹⁾ 따로 서고가 필요하였을 것이며,

81) 서울대학교규장각, 朝鮮後期地方地圖: 全羅道 편 靑山鎭 지도.
 82) 서울대학교규장각, 朝鮮後期地方地圖: 慶尙道 편 漆谷 지도.
 83) 泰安 지도(규장각 소장 고지도)
 84) 咸平 지도(규장각 소장 고지도)
 85) 서울대학교규장각, 朝鮮後期地方地圖: 全羅道 편 咸平縣 지도.
 86) 咸豐 지도(규장각 소장 고지도)
 87) 海南縣 지도(규장각 소장 고지도)
 88) 서울대학교규장각, 朝鮮後期地方地圖: 全羅道 편 興德縣 지도.
 89) 懷德縣 지도(규장각 소장 고지도)
 90) 강혜영, “조선시대의 기록물 관리제도,” 277.

이러한 서고가 호적고라는 명칭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읍지를 살펴보면 戶籍所, 戶籍色이라는 명칭도 볼 수 있다.<표 1> 戶籍所의 경우는 호적고와 같은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戶籍色の 경우 각 고을의 郡衙에서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를 의미한다.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호적을 낱장이나 성책된 형태로 많은 양을 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관리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順天府各掌重記’<표 3>에 의하면 호적을 190여년치의 호적을 보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다.⁹²⁾

<표 3> 순천부 중기자료에서 나타난 문서류

〈順天府各掌重記〉(奎章閣所藏 12517 - 1)						
권수제 : 光武二年戊戌正月日 順天府 各掌重記						
將官廳				(嘉慶) 辛酉式	10卷	
	束伍火兵帳	14件	無	甲子式	10卷	
	中司把總揮帳	1件	無	丁卯式	10卷	
	左司後哨官揮帳	1件	無	丙子式	10卷	
書廳				己卯式	10卷	
	戊辰大帳	36卷		(道光) 壬午式	10卷	
	行審	132卷		乙酉式	10卷	
戶籍				戊子式	10卷	
	辛酉式	1卷	各帳籍1卷	辛卯式	10卷	
	丙子式	1卷		甲午式	10卷	
	己卯式	1卷		丁酉式	10卷	
	壬子式	2卷	帳籍2卷	庚子式	10卷	
	癸酉式	1卷	各帳籍1卷	癸卯式	10卷	
	戊午式	1卷		丙午式	10卷	
	甲子式	1卷		己酉式	10卷	
	丁酉式	1卷		(咸豐) 壬子式	10卷	
	庚子式	1卷		乙卯式	10卷	
	(雍正) 癸卯式	2卷	各帳籍2卷	戊子式	10卷	
	丙午式	2卷		辛酉式	10卷	
	己卯式	4卷	各帳籍4卷	(同治) 甲子式	10卷	

91) 각종 중기에 따르면 호적고에는 호적을 영구 보존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92) 順天府各掌重記, 규장각소장 125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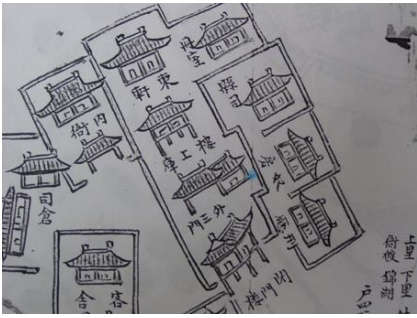
조선시대 기록물의 생산 및 처리과정과 보존

	壬子式	4卷			丁卯式	10卷	
	己卯式	4卷			庚午式	10卷	
	(乾隆) 戊午式	4卷			癸酉式	10卷	
	辛酉式	4卷			(光緒) 丙子式	10卷	
	甲子式	4卷			己卯式	10卷	
	丁卯式	7卷	各帳籍7卷		壬午式	10卷	
	庚午式	7卷			乙酉式	10卷	
	癸酉式	7卷			戊子式	10卷	
	丙子式	7卷			辛卯式	10卷	
	己卯式	7卷			甲午式	10卷	反貼次送于營邸吏家 東賊搶攘時見失
	壬子式	7卷			(建陽) 丙申式	10卷	
	乙酉式	7卷		修理廳			
	戊子式	7卷			節目冊	3卷	
	辛卯式	10卷	各帳籍10卷	民庫			
	甲午式	10卷			田畚行審冊	1卷	
	丁酉式	10卷			節目冊	3卷	一校上 / 一營上 / 一同庫上
	庚子式	10卷			都節目	1卷	壬戌舊件
	癸卯式	10卷			上下區別	1卷	壬戌舊件
	丙午式	10卷			都節目	1卷	辛未舊件
	己酉式	10卷			上下區別冊	1卷	辛未舊件
	壬子式	10卷			各面節目	18卷	辛未舊件
	乙卯式	10卷			三猫島節目	1卷	辛未舊件
					都節目	1卷	丁丑新備
					上下區別冊	1卷	丁丑新備
					各面節目	18卷	丁丑新備

이 자료에 의하면, 순천부의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문서의 종류와 후에 점검하여 문서의 존재유무를 기록하였으며 당시 진행중인 문서의 수량도 보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호적의 경우 시대별 작성의 권수와 분실이나 훼손 되었을 경우 그 문서의 이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호적고의 경우 거행이 끝난 문서로서의 호적을 보존하는 곳이므로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양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성부의 호적의 경우 거행하고 있던 호적은 한성부에 두었으나 거행이 끝난 호적은 江華

府에 두었다. 오늘날 서울시의 문서고가 청도군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江華府는 京籍庫와 府籍庫라는 호적고를 모두 두고 있었다. 육전조례에 따르면 한성부의 호적은 3년마다 개정한 후 익년에 강화도로 옮기게 되어 있으므로 한성부의 호적을 보존하고 있는 장소가 경적이고, 강화부자체의 호적을 보존하는 곳이 부적고로 보여진다.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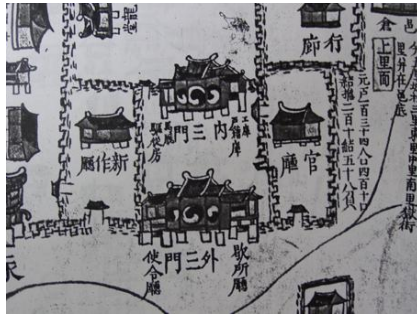
<그림 2> 鎭川의 樓上庫



<그림 3> 咸平의 帳籍庫



<그림 4> 架山鎭의 戶籍庫와 戶籍與軍器雜物



<그림 5> 天安의 戶籍庫

93) 육전조례: 호전(서울: 법제처, 1973), 한성부, 421.
 ‘대 式년에, 호적부를 개정하여 본부 및 강화도에 간직한다.(각 고을에서도 또한 본도와 본읍에 간직한다. 익년 봄에 강화도로 가서 간직하고, 인하여 옛 호적부를 햇별에 소독하여 야 한다.)’

3.2 보존 대책

3.2.1 화재방지의 대책(민가로부터 격리, 외적으로부터 보호)

전통시대의 기록물 관리에서 전란이나 분실, 인위적인 훼손 또는 장마와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 등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화재에 의한 피해가 가장 대표적인 피해였다. 화재의 원인은 자연적인 화재와 인위적 화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연적인 화재를 대비하기 위하여 문서고의 근처에 연못 같은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까이 두거나 민가로부터 격리 하였으며, 인위적인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으로 지킬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문서는 개인들의 신분과 재산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이 많아 특정 문서가 개인이나 집단들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일부러 화재를 내어서 없애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그 예로 단종 즉위년 8월 16일에 소송에 관련된 문서가 보관된 의금부 문서고에 불이 나거나, 같은 해 8월 6일에 역시 소송관련 문서를 보유한 형조의 문서고에 불이 난 것을 들 수 있다.

이렇듯 화재에 의하여 기록물의 소실이 많아 화재로부터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서고에 민가가 접하여 있을 경우 민가를 철거 하거나⁹⁴⁾ 문서고 주위에는 노비들의 주거조차도 할 수 없게 한 기록⁹⁵⁾이 실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梁誠之가 올린 ‘書籍十事’ 중 세 곳의 사고를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관청의 청사에 史庫를 붙여 두고 보관에 있어 화재의 위험과 외적의 침입이 염려

94) 『世祖實錄』, 世祖 5年 8月 壬戌條.

“本曹의 版籍·田案·會計·文書는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은데, 이를 간수하는 樓庫가 人家와 서로 접해 있으니 火災가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그 옆의 人家를 적당히 撤去시키소서.”라고 호조에서 아뢰었다.

95) 『燕山君日記』, 燕山君 11年 2月 甲子條.

“이제 本曹를 儀賓府에 移設하매, 의빈부의 노비 및各司의 노비들이 담 밑에 많이 살고 있어, 만약 화재가 있으면 文書庫에 피질 염려가 있사오니, 그 집을 철거하고 본조의 노비를 그 터에 조금 물러나서 살게 하여 부리기에 편하게 했으면 합니다.”라고 병조판서 任士洪이 아뢰었다.

되어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하여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⁹⁶⁾

3.2.2 증거자료로서의 대책: 분실, 산일에 대비, 등록작성

臚錄이라고 하면 베껴서 기록한다는 뜻이다. 주로 상설 관청에서 기록 보존을 목적으로 행정과정에서 산출된 원본 문서들을 관청의 소용에 맞게 등출하여 편집한 복본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의 작성목적은 해당 관청의 행정과정에서 미래의 필요에 의하여 준비한다는 데 있다.⁹⁷⁾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문서 처리방식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장서각에 소장된 실물 중에서 극히 드문 경우의 예로서 등록 중에는 같은 종의 원 문서를 몇 십장씩 모아서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앞뒤에 표지를 대고 成冊한 경우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 등록이 문서를 수록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등록에 관한 실록기사⁹⁸⁾에 의하면 기록물의 보존된 현황을 알기 위하여 등록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2.3 副本의 작성

조선시대의 기록물의 경우 보존·관리하는 과정에서 기록물의 화재에 의한 소실, 분실, 산일 등의 기록물의 망실문제에 대비하고 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다수의 부분을 만들어 분산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특히 조선조의 대표적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朝鮮王朝實錄」과 의궤류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분산하여 보관하도록 하였고, 국정 운영에 중요한 문서인 호적과 노비안 등도 분산하여 보관하였다.

96) 梁誠之, 「訥齋集」. '書籍十事'

97) 金赫, "朝鮮後期 中央官廳 記錄物에서 臚錄의 위상," 季刊 書誌學報, 제26호(2002. 2), 98.

98) 「英祖實錄」, 5年 6月 甲午條.

1417년(태종 17) 각사의 노비쇄권색에서 상소의 결과로 시행된 것 중에서 정유년 노비안은 2분을 만들어 하나는 本官에 두고, 또 하나는 가각고에 보관하였으며, 외방에서는 1본은 본관에 두고 또 다른 하나는 營庫에 두게 하여 간위를 방지하게 하였다.⁹⁹⁾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노비안을 2부를 만들어 본관과 함께 가각고에 각각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앞서 살펴본 대로 「經國大典」에서 戶籍條와 量田條, 藏文書條에서 여러 증빙 문건들을 여러 장소에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건문서에서도 실록기사에서 복본 작성과 그 보관처를 말하고 있다.¹⁰⁰⁾

이와 같이 기록물의 부분을 만들 때에 자료의 중요성에 따라 2부에서부터 8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임진왜란 등의 전란으로 인하여 상당량의 기록물이 소실되거나 약탈을 당하여 기록물의 부분을 작성하는 것과 분산 보관하는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¹⁰¹⁾

숙종 때 의금부에 문서 보관이 허술하여 추안이 유실되거나 훼손되어지는 것들이 많아 증거자료들이 부족하여 활자로써 보관 문서를 여러 건 인출하여 3개 처에 보관하자는 건의가 있자, 3건을 필사하여 의금부와 충훈부 및 승정원에 두기도 하였다.¹⁰²⁾

99) 「太宗實錄」太宗 17年 閏5月 辛酉條.

100) 「世宗實錄」世宗 28年 1月 丁亥條.

‘물건마다 시험하여 공용하는 수량을 참작 결정하고, 또 一分의 여유를 더 두어 결손나는 자료에 대비하고, 일마다 뒤따라 의정부에 알려서, 申聞하여 임금의 允許를 받아 案籍을 정리하여 만들게 하되, 무릇 43司에 매 사마다 각기 3건을 만들어, 1건은 본조에, 1건은 가각고에, 1건은 각기 그 官司에 간수하여, 永世의 출납하는 법식으로 삼게 하고, 또 시험하지 않은 오랜 시일을 경과한 물건은 혹시 후일에 고쳐 제조한다면, 그 官司로 하여금 本曹에 보고하게 하고.’

101) 강혜영, “조선시대의 기록물 관리제도,” 273.

102) 「숙종실록」6年. 10月 庚寅條.

‘주강(畫講)에 나아가니, 시독관(侍讀官) 이사명(李師命)이 말하기를, “의금부(義禁府)에 두는 문서(文書)가 매우 허술하여, 예부터 내려오는 추안(推案)이 혹 유실된 것이 있기도 하며, 혹 뭉개진 것이 있기도 합니다. 간흉(奸兇)의 무리들로 하여금 세월이 오래된 뒤에 그 사이에 간교한 짓을 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건(文件)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번에 추안을 만약 활자(活字)로 여러 건을 인쇄해내어 本府와 승정원·忠勳府에 두게 된다면, 허술해지는 폐단을 없앨 것 같습니다.”하고, 特進官 趙師錫이 말하기를, “비록

그리고 梁誠之가 올린 ‘書籍十事’에서 「實錄」과 軍案과 같이 緊關한 문서의 경우 쇠와 주석으로 그 등을 싸고 비단으로 裝幀을 꾸미어 도둑을 부르고,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져가기가 곤란하여 한 벌은 크게 만들어 작은 도둑이 훔쳐가기 힘들게 만들고, 한 벌은 가볍고 편리하게 만들어서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여 기록물의 보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여러 방식으로 복본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주장하기도 하였다.

3.2.5 점검자료: 形止案, 曝曬形止案의 작성

‘형지’는 문서나 대장으로 정리한 문건이나 책, 형지기라고도 한다. 형지에 대한 의미는 시대와 문헌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사실의 전말에 대한 기록 혹은 그림(도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실의 自初至終 또는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뜻하며, 사적·형적 등을 달리 표현하는 속문으로 추측된다. 특히, 조선시대 국가 소속 노비의 장부도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 처음에는 공노비 전체의 대장을 가리켰으나, 뒤에 왕실의 사적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내수사 노비를 제외한 각 관서 소속 노비들의 대장만을 뜻하게 되었다. 1년에 1번씩 출생·사망 상황 등을 기록한 草案과 그 기록을 3년에 1번씩 모은 續案, 그것들을 바탕으로 20년마다 한번 씩 작성한 正案으로 구성되었다.¹⁰³⁾

형지안은 작성을 할 때 여러 부를 작성하여 刑曹, 掌隸院, 本道와 本邑 등에 보관하였다. 형지안은 공노비 대장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귀중한 국가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록들도 많이 남아 있다. 儀軌·實錄·璿源譜 등을 史庫 등에 소장하는 일인 奉安에 대해 기록한 것과, 서적과 문서를 일정한 기간마다 벌에 말리고 바람을 쏘이는 일인 曝曬¹⁰⁴⁾에 대한 기록¹⁰⁵⁾이 있다. 책이나 문서의 경우

인쇄하여 출판하지 아니하더라도 만약 몇 건만을 精寫하여 간수해 둔다면, 유실되어서 弄奸을 부리는 폐단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의 명하여 3건을 써내어 의금부와 충훈부 및 승정원에 갈무리하게 하였다.

103)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4권, 828-829.

104) 책, 종이, 곡식, 의복 등을 햇빛에 말리거나 바람을 쐬어서 습기를 제거하는 것.

105) 「世宗實錄」世宗 28年 10月 壬寅條.

대개 종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보존할 경우에 습기가 차서 썩거나 벌레가 먹게 된다. 그래서 오래 동안 보존하기 위하여 햇볕에 말려 습기를 제거 하면서 관리하여야 하였다. 이 두 절차를 동시에 담고 있는 즉 봉안과 포쇄가 함께 담겨져 있는 형지안도 많은데, 이런 형지안을 포쇄형지안이라고 한다.

각 사고의 실록을 보존할 때에 3년마다 춘추관 관원을 파견하여 포쇄할때에 실록과 서적의 목록을 작성하고 일의 과정과 담당 관원들의 명단을 덧붙인 형지안을 제작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규장각에는 실록 형지안으로 필사본 357책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밖에 사고에 딸린 璿源閣에는 선원보와 국왕의 가계도, 국왕 등에 대한 行狀 등의 기록, 친필, 국왕의 저술, 왕비의 족보 등도 함께 보관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201책의 형지안이 전해지고 있다.

기록물의 보존을 위하여 문서를 점검하고, 문서 등의 종이기록물의 물리적 보존을 위한 포쇄의 기록이 있는 포쇄형지안들의 작성에서는 오늘날의 종이기록물의 물리적 보존을 위하여 향온, 향습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기록물 보존의 방법의 하나로써 이해할 수 있다.

3.2.6 사무인수인계 및 점검: 重記, 解由文書

‘중기’의 사전적 의미로는 사무를 인계할 때 전하는 문서¹⁰⁶⁾ 또는 錢穀을 출납하던 관아의 장부¹⁰⁷⁾를 의미한다.

중기의 의미와 실제의 용례는 「朝鮮王朝實錄」에 언급된 내용을 통하여 중기의 의미와 용도를 알 수 있어서, 실록에서 알아보면 중기의 내용은 대체로 물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과 대조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해당자의 무고함을 증명하거나 어떤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혹은 재정

‘의정부에서 예조의 문헌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春秋館 史庫의 문서는 科擧式年의 예에 의거하여 2년을 걸러서 辰年·戊年·丑年·未年에 햇볕에 쬐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06) 「古法典用語集」(서울: 育志社, 1981).

107) 세종대왕기년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서울: 동사업회, 2001).

정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중기를 위조하거나 감추는 일들을 하면 엄한 처벌이 따랐음을 알 수 있다.¹⁰⁸⁾

즉 중기는 각 관청마다 보유한 물품의 변동사항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마다 상급기관으로 호조나 병조, 관찰사에 보고를 하며 관리 교체시 해유를 위한 인수인계의 문서로서도 활용되었다.

중기에 수록된 기록자료 중 문서는 각 년별 호구장, 노비안, 전답안과 ‘중조약장 합편’, ‘조미조약’, ‘각국약장집합편’ 등 국가 간의 외교관련 문서를 비롯하여 통치용 문서자료로서 인구나 토지, 세금에 관련된 문서이다.

그리고 소장경위 즉 문서의 이관 및 전래경위도 나타나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도 표시되며, 화재로 인한 소실이나, 누구에 의한 분실이나, 물리적 손상에 의한 보관상태까지 표시되어 있고, 점검과 함께 조치내용도 표시되어 있다.

해유문서란 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면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모든 관리는 교체될 때 후임자에게 그 사무와 관리물품을 重記와 대조하여 재고를 조사하고, 업무를 인계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후임관에게 인계하는 解由라는 과정을 거치며 이때 작성하는 문서를 해유문서라고 한다. 지방관의 경우에는, 전임관이 후임관에게 해유를 받기 위하여 關을 보내는데, 이 문서에 이상이 없을 때 후임관은 그 도의 관찰사에게 첩정을 올렸다. 관찰사는 이 첩정을 첨부하여 재정관계는 호조에, 軍器관계는 병조에 해유이관을 하였다. 호조·병조에서는 이것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사실을 이조에 알리는 해유이관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조에서는 해유를 받고자 하는 전임관에게 照訖을 발급하였다. 조홀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이조에서 접수한 해유이관의 여백에 ‘照訖付該員’이라 쓴 題判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기와 해유문서의 수록내용을 보면 점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문서

108) 南權熙, “重記資料 分析에 의한 朝鮮時代 地方 官衙의 記錄管理,” 사회과학 제14집(2002), 60-61.

가 보존이 잘 되고 있는지, 소실이나 훼손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보유문서의 안전한 보존을 가능하게 하였다.

4.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사료에 나타난 기록들을 통하여 조선시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처리과정과 보존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의 기록물의 수집 및 처리과정은 정확하게 실제적인 모습을 알 수는 없으나 당시 통용된 여러 법전의 규정에 나와 있는 규정들과 「實錄」이나 고문서 등에 의하여 기록물의 수집 및 처리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첫째, 기록물의 수집 및 처리과정도 조선시대의 경우 오늘날과 유사한 처리과정을 가지고 있다. 가각고와 같은 여러 기록물관리 기관에서 기록물의 수집, 分類, 作綜, 懸籤, 錄簿 등과 같은 기록물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어 현행의 기록물 수집 및 처리과정과 비슷한 처리과정을 보여주었다.

둘째, 조선시대의 경우 비현용문서들 중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영구·준영구 기록물들을 보존하며, 기록물의 보존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을 위하여 문서의 열람을 위하여 정리되어졌으며 가각고, 史庫를 비롯한 문서고, 호적고 등과 같은 기관들을 중앙에는 물론 지방에 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 보존하여 영구히 후세에 전하려던 노력을 現傳하는 사료와 기록에서 확인하였다. 지방관아의 문서고나 호적고에서 자체의 기록물을 보존·관리하였던 것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문서를 이관하기는 하나 현행의 기록관(자료관)과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통시대의 기록보존의 경우 실록이나 각종 문서에서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기록물을 보존하는 문서고 등의 보존시설은 화재로부터 기록물을 보호하기위하여 민가를 문서고로부터 격리하거나, 문서고

의 주변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전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속에 두는 경우도 있었으며, 긴급사태시에 이송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은 중요기록물을 복본화 하거나 마이크로필름화 또는 디지털화하는 것과 같이 전통시대에는 기록물이 소실되면 증거로서 남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이나 謄錄을 하여 보존하였고, 형지안이나 포쇄형지안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중기나 해유문서에 의하여 점검의 과정을 거쳐 보존되었다.

이상과 같은 조선시대의 기록물처리과정과 보존적인 측면을 여러 사료들에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 다룬 것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각 기록관리기관들의 개별적 기록물 처리와 정리 방법들에 대해서 앞으로 현대기록물의 관리와 비교적인 관점에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이 연구가 전통적인 기록물 처리와 제도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

「經國大典」, 「訥齋集」, 「順天府各掌重記」,

「儒胥必知」, 「朝鮮王朝實錄」, 「秋官志」

강혜영. “조선시대의 기록물 관리제도.”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관리와 기록물의 디지털화 표준동향」(2005), 261-282.

金相溟. “朝鮮時代の 公文書管理.” 「書誌學研究」 創刊號(1986), 157-175.

규장각자료총서. 「추관지」 제1편, 館舍. 규장각자료총서 官署志篇.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4. 영인본.

金雲泰. 「조선왕조행정사 근대편」 서울: 일조각, 1970.

金在得. 「古文獻用語解例」 서울: 培英社, 1983.

김택민. 「역주 당육전(상)」 서울: 신서원, 2003.

- 金 赫. “朝鮮後期 中央官廳 記錄物에서 謄錄의 위상.” 『서지학보』 제26호(2002, 12), 93-111.
- 南權熙. “架閣庫考.” 『書誌學研究』 創刊號(1986), 129-156.
- _____. “重記資料 分析에 의한 朝鮮時代 地方 官衙의 記錄管理.” 『사회과학』 제14집(2002), 57-99.
- _____. “15·16세기 慶尙道 地域의 刑獄關聯文書와 牒呈文書.” 『書誌學研究』 제23집(2002, 6), 235-289.
- 朴竣鎬. “洪武禮制와 朝鮮 初期 公文書 制度.” 『고문서연구』 제22호(2003), 141-167.
- 裴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 대구: 태일사, 2002.
-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서울: 育志社, 1981.
- 송기중 외. 『조선왕조실록' 보존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윤국일. 『譯註 經國大典』 서울: 여강, 2000.
- 안병희. “古書의 紙背文書에 대하여: 排字禮部韻略에 보이는 牒呈을 중심으로.” 『서울대도서관보』 (1975), 2-10.
- 이겸노. “책방비화.” 『신동아 6월호』 (1973), 202-205.

